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6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8. 7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인구7만이상인 다사읍에 2개과를 신설

3. 주요내용

가. 제2조(국장 및 실·과·소장 등의 직급 등)

- 다사읍에 과 신설로 인한 과장 직급 지정

나. 제17조(설치)

- 법 제4조의 2로 변경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성별/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 / 의견 있음 등

(3) 규제심사 : 원안 동의

(4) 입법예고 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에 의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
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함.

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(국장 및 실·과·소장의 직급 등)을 (국장 및 실·과·소장 등의 직급 등)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읍·면장의”를 “읍·면장 등의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4호 중 “건축행정·건축지도·주택·공동주택관리·공공시설·디자인·도시재생”을 “건축행정·주택·공동주택관리·공공시설·디자인·도시재생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제4조”를 “제4조의 2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국장 및 실·과·소장 <u>의</u> 직급 등) 대 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본청 의 국장 및 실장, 과장,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·농업기술센터소장, 하부행정기 관의 장인 읍·면장 <u>의</u>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2조(----- <u>등의</u> ----- --) ----- ----- ----- ---- <u>등의</u> ----- -----
제8조(건설도시국)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 한다. 1.~ 3.(생략) 4. 건축행정· <u>건축지도</u> ·주택·공동주택관리· 공공시설·디자인·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5.~ 7.(생략)	제8조(건설도시국) ② ----- ----- 1.~ 3.(현행과 같음) 4. <u>건축행정·주택·공동주택관리·공공시설· 디자인·도시재생에 관한 사항</u> 5.~ 7.(현행과 같음)
제17조(설치) ① 법 제3조 및 <u>제4조</u> 에 따라 읍·면을 둔다.	제17조(설치) ① ----- <u>제4조의 2</u> ----- -----